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2면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6면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61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성 주 군 의 회

202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실효성 제고

방문개요

○ 회 기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6. 10. 19.(월) ~ 10. 22.(목) [4일간]

○ 장 소 :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외 13개소

○ 참 석 : 15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의사팀장 외 3)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현장 개선사항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장 현황

읍 면	사업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비 고
계	7개읍·면, 14개소	10개 부서	
성주읍	①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도시계획과	
	②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조성사업	건 설 과	
	③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 정 과	
	④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자원순환사업소	
선남면	⑤성주힐링승마체험장 및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관 광 과	
	⑥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	농업기술센터	
용암면	⑦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사업장	환 경 과	
금수강산면	⑧성주호 별빛레저지구 조성사업	관 광 과	
	⑨성주호 보도교 설치공사	관 광 과	
대가면	⑩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 광 과	
	⑪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⑫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농업기술센터	
벽진면	⑬농로포장사업(매수2리(세월)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벽 진 면	
월항면	⑭농로포장사업(용각3리(용문) 농로 정비공사)	월 항 면	

세부시간계획(안)

10. 19.(월)

※ 방문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30 ~ 10:35	5′	이 동	• 의회 출발	
10:35 ~ 10:55	20′	성주읍	•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조성사업 성주읍 용산리 1180-5	건 설 과
10:55 ~ 11:05	10′	이 동		
11:05 ~ 11:25	20′	성주읍	•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성주읍 성산리 69	도시계획과
11:25 ~ 11:35	10′	이 동		
11:35 ~ 11:55	20′	월항면	• 농로포장사업(용각3리 용문 농로 정비공사) 월항면 용각리 1078-1	월 항 면
		중 식		

10. 20.(화)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15	15′	이 동	• 의회 출발	
10:15 ~ 10:35	20′	선남면	• 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 선남면 운용로 1614-27	농업기술센터
10:35 ~ 10:50	15′	이 동		
10:50 ~ 11:10	20′	선남면	• 성주힐링승마체험장 및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선남면 용신리 933-1	관 광 과
11:10 ~ 11:30	20′	이 동		
11:30 ~ 11:50	20′	용암면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취소 사업장 용암면 용계리 687-1	환 경 과
		중 식		

10. 21.(수)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05	5′	이 동	• 의회 출발	
10:05 ~ 10:25	20′	성주읍	•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성주읍 삼산리 500-11	자원순환 사업소
10:25 ~ 10:40	15′	이 동		
10:40 ~ 11:00	20′	대가면	•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대가면 옥성리 25	체육시설 사업소
11:00 ~ 11:10	10′	이 동		
11:10 ~ 11:30	20′	대가면	•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대가면 칠봉리 산31-22	관 광 과
11:30 ~ 11:40	10′	이 동		
11:40 ~ 12:00	20′	대가면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대가면 참별로 2479	농업기술 센터
		중 식		

10. 22.(목)

시 간	소 요	사업 및 사업장명		소관부서
10:00 ~ 10:10	10′	이 동	• 의회 출발	
10:10 ~ 10:30	20′	성주읍	• **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성주읍 금산리 724-1	농 정 과
10:30 ~ 10:45	15′	이 동		
10:45 ~ 11:05	20′	벽진면	• **농로포장사업(매수2리(세월)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벽진면 매수리 981	벽 진 면
11:05 ~ 11:25	20′	이 동		
11:25 ~ 11:45	20′	금수 강산면	• **성주호 별빛레저지구&보도교 설치공사** 금수강산면 봉두리 산 105-3 금수강산면 봉두리 595-2	관 광 과
		중 식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0. 16.(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강태의원외6인】
3.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억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정자의원외6인】
7.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8.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구교강, 장익봉, 김성우,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시설·경영 현대화 등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규정(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함)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성주군 공보 및 성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성주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상인조직의 규약(정관)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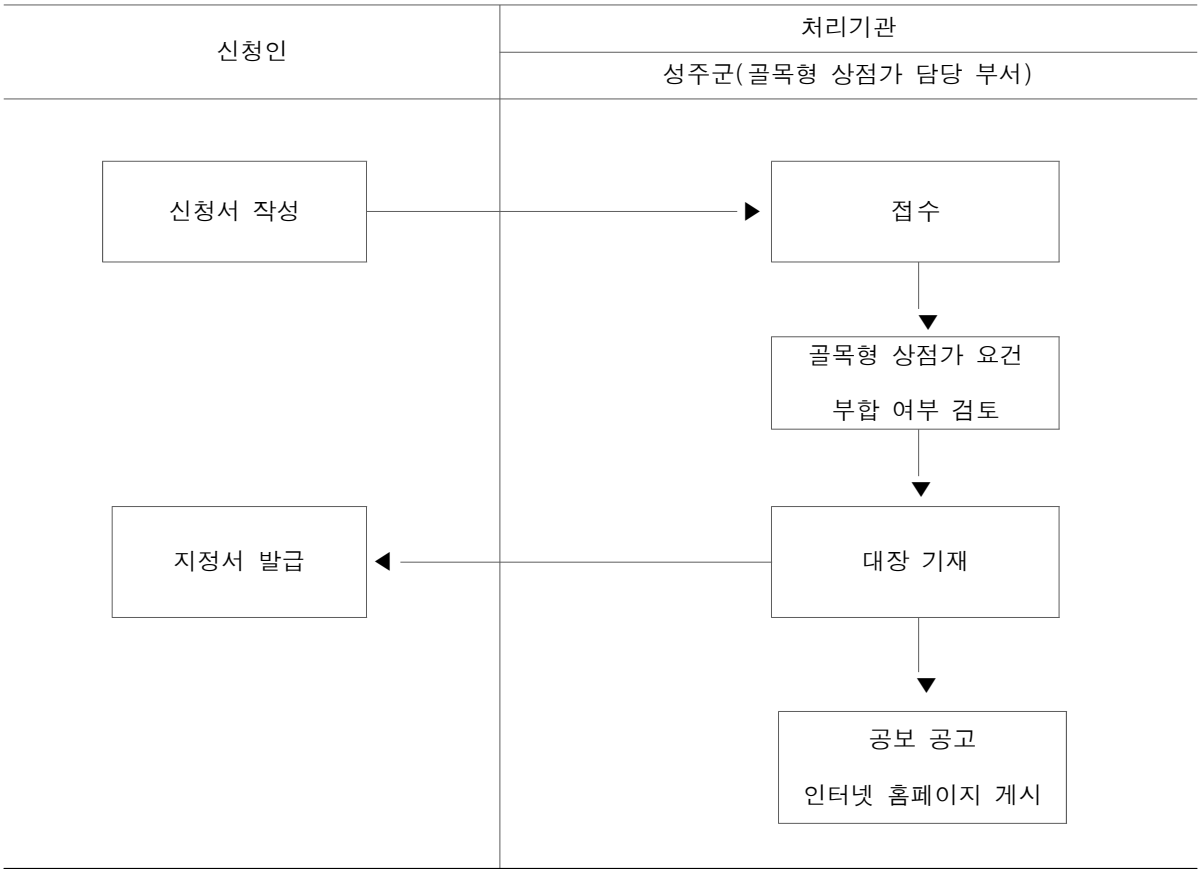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 /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확 인

붙임 관련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강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이강태,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여노연, 유정자

1. 제정이유

성주군의회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고문의 정원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까지)

다.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라. 고문 회의 개최 및 자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성주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성주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성주군 법률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적부 비치) 제2조에 따른 자문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 실적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성주군의회의 입법 · 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소 속 :

성 명 : (인)

성주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입법 · 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자 문 사 항				처 리 결 과		
연월일	건 명	의뢰인	의뢰내용	연월일	고문인	회신내용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김성우, 장익봉, 구교강,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건설자재 단가와 노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 상한액을 차등 조정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3천만원 이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만원 이하
2. 100세대 미만 아파트 : 4천만원 이하
3. 100세대 이상 아파트 : 5천만원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90%이하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 ---------- ----------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아파트(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만원 이하
<신 설>	2. 100세대 미만 아파트 : 4천만원 이하
<신 설>	3. 100세대 이상 아파트 : 5천만원 이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배재억,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대부로 인한 재산 활용의 제약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안 제2조제3항제3호)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경작용·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사무용 건물은 제외).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 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결사항) ①·② (생 략)	제2조(의결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3.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경작용·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사무용 건물은 제외).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대부 기간을 포함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개정이유

현행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서식을 개선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별표)

3. 규칙안 : 붙임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신분증”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분증”을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6월이내”를 “6개월이내”로 한다.

별표및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원----------신분증----------.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 <삭 제>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생 략)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6개월 이내----------. ③ (현행과 같음)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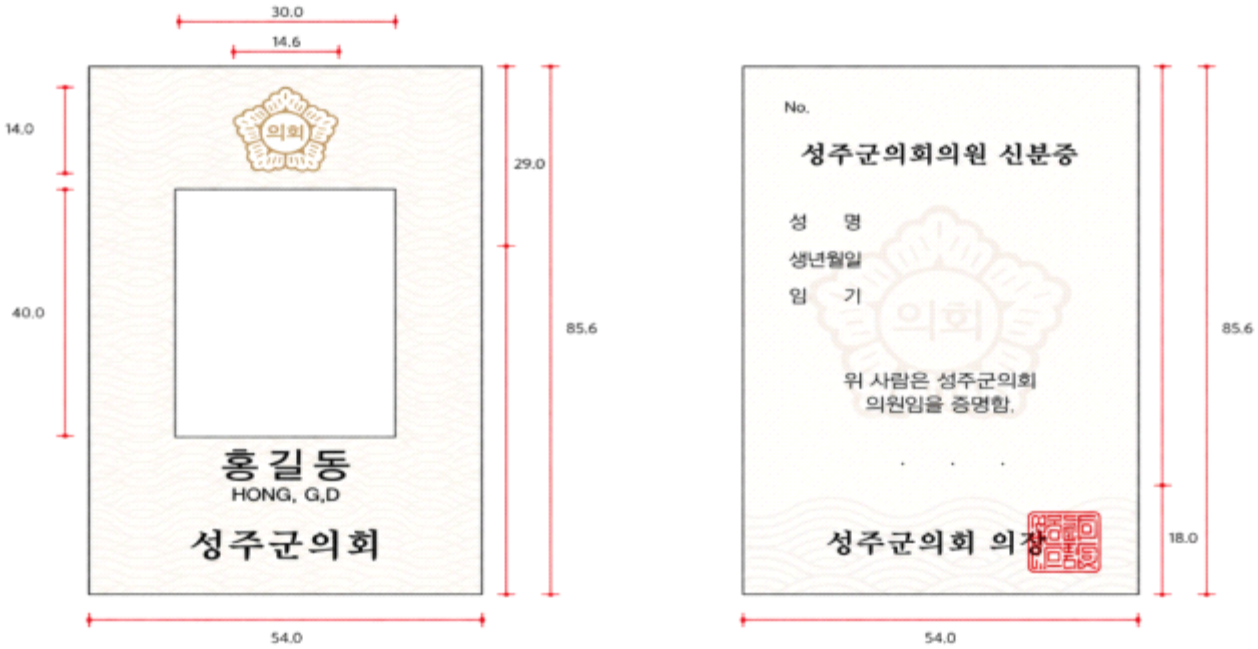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26mm × 34m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HONG, G.D)
2. 기재사항

구 분	글자 등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앞면)	16포인트	윤고딕 330
영문성명(대문자)	8포인트	Univers55Roman
성주군의회	14포인트	윤명조 150
신분증번호	7포인트	윤고딕 330
성주군의회의원 신분증	11포인트	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	8포인트	윤고딕 330
성주군의회의장	11포인트	윤명조 150
성주군의회의장 직인	10mm×10mm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바탕무늬색 : C0 / M0 / Y8 / K12
   나. 의회휘장 전면 : C10 / M20 / Y55 / K15
   다. 의회휘장 후면 : C5 / M10 / Y30 / K8
4. 제질은 P.V.C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6. 카드규격 : RF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신분증 번호	발급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반환	결재란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첨 부 : 사진 2매

이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성주군의회 의장 귀하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발 의 자 : 유정자,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배재억, 여노연, 이강태

1. 개정이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군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안 제28조의2)

3. 규칙안 : 붙임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② (생략) <신 설>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②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나. 출 연 금 : 인재육성기금 1,085백만원(군비)

다.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1) 기 간 : 2027. 1. ~ 12.

2) 예 산 액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구분	예산액(백만원)	내용	비고
계	1,300		
인건비	900	원장 및 강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400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3) 운영현황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26명
- 수 업 : 국영수사과 주요과목, 입시 및 학습법 컨설팅 등
- 인 력 : 원장 및 강사(전임 6, 시간 5), 행정보조 2
- 건 물 : 지상 2층(1,364㎡), 대강당, 강의실 10, 자율학습실 3 등

라. 기대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및 학업 성취도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지방재정법」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4)「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5)「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조성 기금 출연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4조(기금보조 및 사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법인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설치) 교육원의 설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①군수는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가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과년도 교육원 운영비 집행실적 등

나. 추계기간 : 2027년 ~ 2031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총 비용(a-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 연도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합 계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군비(기금)	1,085	1,085	1,085	1,085	1,085	5,425
기타	0	0	0	0	0	0

5. 부대의견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체기금의 이자 수익금만으로는 교육원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인재육성기금에서 출연 받고자 함.

6. 작성자

미래전략실 교육정책팀장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5,174천원(전년 대비 5.83%, 285천원 증가)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51,739,829천원

(단위 : 천원)

25년 결산 지방세	25년 결산 보통세			26년 정산액	27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51,739,837	51,739,829	50,889,156	850,673	-	5,174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027. 3월 중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등

나. 최근 5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28,185	5,966	5,612	5,970	5,748	4,889

다. 출연기관 현황 :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 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 평가
3. 지방세의 연구 · 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연 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4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

구 분	계	원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임 원 (2026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성 낙 인	경상남도 창녕군수	2026.3.13. ~ 2027.3.12.
이 사	신 승 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김 동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2025.8.30. ~ 2026.8.29.
이 사	이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심 원 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신 종 우	경상남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김 병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조 규 일	경상남도 진주시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이 상 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5.8.30. ~ 2027.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옥 흔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026.3.5. ~ 2028.3.4.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4	2025	2026
	예산액	17,813	17,467	16,757
	지자체 지원액	13,079	12,415	10,470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자산	28,531
	부채	1,583
	자본	26,9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600	16,554	1,379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성주군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51,739,829천원)의 1만분의 1.0 출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재무과 부과팀장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94(2025. 9. 2.)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 현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총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9194(2026. 7. 28.)]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726(2026. 10. 7.)]

3)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2026. 7. 27. ~ 8. 21.)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6인”을 “5인”으로, “총무새마을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인,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2인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6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새마을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 5인---------- ----------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인,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2인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재무과 통합징수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 이후,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률을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경감률 변경(안 제4조)

구 분	기 존		변 경
제 목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근 거 법 률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 감 률	100분의 75		**법 100분의 50 추가경감률 100분의 50**

나. 일몰 기한 제정 및 경감률 변경(안 제8조)

구 분	기 존		변 경
일 몰 기 한	-	⇨	**5년간 / 3년간**
경 감 률	100분의 50		**100분의 50 / 100분의 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6670(2026. 7. 10.)]

2)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726(2026. 10. 7.)]

3)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2026. 7. 27. ~ 8. 2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을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된”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국가유산기본법」”을 “면제하고, 같은 조례”로, “국가유산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 중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를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지정유산 또는 국가 및 시·도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 면제하고, 같은 조례---------- 보호구역 ---------- 100분의 50----------.
<신 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관련법령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할 수 있다.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및「자연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도지정문화유산의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물·식물을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

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항에 따른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재무과 과표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0. 16.(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강태의원외6인】
○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억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정자의원외6인】
○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성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시설·경영 현대화 등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정·변경 및 취소 절차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의회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법률 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고문의 정원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까지)

다.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라. 고문 회의 개최 및 자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회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 체계를 마련하여 의안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법률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설자재 단가와 노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 상한액을 차등 조정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5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자재 단가와 노임 상승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 조정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건설자재비 및 노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대부로 인한 재산 활용의 제약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또는 대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안 제2조제3항제3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갱신이 예상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장기간 사용·대부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사전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행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서식을 개선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별표)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관련 서식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신분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신분증 관리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군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안 제28조의2)

3.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10일 이내에 집행부가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7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나. 출 연 금 : 인재육성기금 1,085백만원(군비)

다. 사업내용 : 성주군 별고을교육원 운영

1) 기 간 : 2027. 1. ~ 12.

2) 예 산 액 : 1,300백만원(**출연금 1,085**, 장학회 215)

구분	예산액(백만원)	내용	비고
계	1,300		
인건비	900	원장 및 강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400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3) 운영현황

- 대 상 : 관내 중고등학생 126명
- 수 업 : 국영수사과 주요과목, 입시 및 학습법 컨설팅 등
- 인 력 : 원장 및 강사(전임 6, 시간 5), 행정보조 2
- 건 물 : 지상 2층(1,364㎡), 대강당, 강의실 10, 자율학습실 3 등

라. 기대효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및 학업 성취도 향상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 10억 8,500만원을 출연하여 성주군 별고을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원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주요 교과목 수업과 입시·학습법 컨설팅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지역 인재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 연 금 : 5,174천원(전년 대비 5.83%, 285천원 증가)

라. 출연금 산정기준

- 전전연도(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51,739,829천원

(단위 : 천원)

25년 결산 지방세	25년 결산 보통세			26년 정산액	27년 연구원 출연금
	합계	현년도	과년도		
51,739,837	51,739,829	50,889,156	850,673	-	5,174

마.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

바. 출연시기 및 방법 : 2027. 3월 중 현금 출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517만 4천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94(2025. 9. 2.)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 현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6명(총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 이후,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률을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경감률 변경(안 제4조)

구 분	기 존	변 경
제 목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근 거 법 률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 감 률	100분의 75	**법 100분의 50 추가경감률 100분의 50**

나. 일몰 기한 제정 및 경감률 변경(안 제8조)

구 분	기 존	변 경
일 몰 기 한	-	**5년간 / 3년간**
경 감 률	100분의 50	**100분의 50 / 100분의 25**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와 경감률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과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